

부산시설공단 육아휴직 대체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

『행복하고 안전한 도시공간을 만드는 시민의 기업』 부산시설공단에서 다음과 같이 육아휴직 대체 기간제 근로자를 모집합니다.

2021. 9. 7.

부산시설공단인사위원회위원장

1. 채용인원 및 계약기간

채용분야	채용인원	계약기간	업무내용
기간제근로자 (콜센터상담원)	1명	임용일로부터 2024.1.2.까지	특별교통수단(마마콜 포함) 콜센터 이용접수, 배차, 안내전화 및 기타 상담업무

- ※ 채용일정 또는 결격사유조회 등의 사유로 임용일이 변경될 수 있음
- ※ 채용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결격사유 또는 지원서 허위기재(증빙 불가 포함) 발견 시 합격 취소됨
- ※ 육아휴직 대체 기간제 근로자로서 정규직 전환과 무관

2. 근로조건

구분	내용
임용신분 및 근로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용신분: 기간제근로자■ 근로기간: 임용일로부터 2024. 1. 2.까지<ul style="list-style-type: none">* 채용일정 등의 사유로 임용일이 변경될 수 있음* 채용 부정사항 발생 시 합격 취소 가능* 육아휴직 대체 기간제근로자로서, 근로계약기간보다 빨리 육아휴직자 복직 시 계약 해지 가능하며, 육아휴직 연장 시 계약기간 연장 가능■ 근무시간: 교대근무(07시~16시 / 11시~20시 / 13시~22시 / 22시~다음날 07시)
급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급제 적용 (임금수준은 월 평균 2,600천원 정도임)<ul style="list-style-type: none">▷ 각종 제수당은 내부기준에 따라 지급
근무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산시설공단 복지콜팀(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1226번길 18)

3. 응시자격

- 다음 ①, ②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하며,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함
 - ① 공고일 전일 현재 부산광역시 거주자(주민등록 기준)
 - ※ 최종합격자 발표일까지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 ② 공고일 전일까지 부산광역시 거주기간이 총 3년 이상인 자(주민등록 기준)
 - ※ 행정구역의 통·폐합 등으로 주민등록상 시·도의 변경이 있는 경우 현재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며, 과거 거주 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총 거주한 기간을 월(月) 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이면 충족함
 - ※ 재외국민(해외영주권자)의 경우 위 요건과 같고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 증명으로 거주한 사실을 증명함
- 연령: 제한없음
- 학력·성별: 제한없음
- 병역: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 현역복무 중인 자는 단계별 전형절차(면접시험 등)에 응시가 가능하여야 하며, 최종합격자 발표일 전일까지 전역 가능하여야 함
- 야간 및 휴일근로, 교대(순환근무)에 동의하는 자
- 공단 인사규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규정 제4조의 불합격 판정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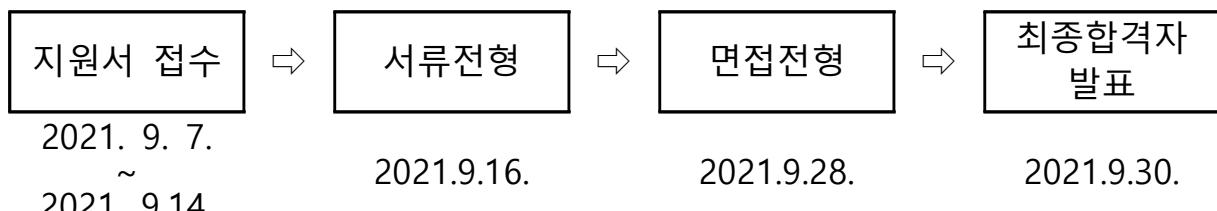
❖ 공단 인사규정 제14조의 임용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6의2.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4.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 선고가 확정된 사람
7.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사람
8. 병역의무자로서 병역 기피의 사실이 있는 사람
9. 채용 관련 비위행위로 합격한 사람
10. 채용 관련 비위행위로 면직된 자 중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 ①의 요건을 반드시 충족하고, ②~⑤ 중 하나 이상 충족하는 자
- ① 콜센터 상담원 근무경력 또는 전화교환 업무경력 1년 이상인 자
 - ② 컴퓨터활용능력 1급 또는 컴퓨터활용능력 2급 자격증 소지자
 - ③ 정보처리기능사 또는 정보처리산업기사 또는 정보처리기사 자격증 소지자
 - ④ 워드프로세서 1급(단일등급 포함) 또는 워드프로세서 2급 자격증 소지자
 - ⑤ 사회복지사 1급 또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소지자

4. 전형절차 및 방법

- 전형절차(블라인드 채용)



※ 전형단계별 불합격자는 다음 전형단계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서류전형: 응시자격요건 충족 여부 및 지원서(자기소개서 포함) 심의

○ 심사항목

구 분	경력점수(30)			자격점수(30)			자기소개서(40)			
	3년 이상	2년 이상 ~3년 미만	1년 이상 ~2년 미만	1급/ 기사	2급/ 산업기사	기능사	직무 적합도	의사소 통능력	대인관계 능력	문제해결 능력
100점	30	20	10	30	20	10	10	10	10	10

※ 워드프로세서(2012년 이후 취득)는 1급으로 간주

※ 자격증은 유리한 것 1종만 적용

예) 워드프로세서, 정보처리기능사 둘 다 소지한 경우 워드프로세서에 해당하는 점수 부여

※ 단, 자기소개서 검증 결과 비속어 사용, 의미 없는 단어 반복, 타인의 작성내용과 동일한 경우, 질문문항 간 동일 내용 기재 등 불성실 작성 등은 불합격 처리

※ 경력 증빙서류 미제출 시 응시지원서 내 기재한 해당 경력 점수 미반영

○ 합격인원: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예정인원의 4배수(동점자 모두 합격 처리)

※ 응시자가 채용예정인원의 4배수 이내일 경우 응시자격 적격 여부만 심사

□ 면접시험

- 면접대상: 서류전형 합격자
- 심사항목: 직무적합도, 조직적합도, 전문능력, 조직이해능력, 직업윤리 등 5개 항목
- 과락기준: 면접위원 산술평균 70점 미만(소수점 셋째 자리 이하 절사)

□ 가산점

구 분	가산대상	가산비율	비 고
취업지원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음법률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ul style="list-style-type: none">-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관련법이 정하는 바에 의함	서류전형 면접전형

- ※ 가산점은 서류전형 또는 면접전형 만점의 40% 이상 득점자에게 적용함
(취업지원대상자는 관련법에 따라 적용)
- ※ 취업지원대상자의 가산점은 관련법령에 의거 국가보훈처에서 인정하는 적용 비율을 가산하며, 가점 합격률 상한제(직렬별 채용예정인원의 30%) 적용함
-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산비율은 사전에 본인이 국가보훈처에 확인하여야 함
- ※ 모든 가산대상은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유효하게 등록되어야 함

□ 최종합격자 결정

- 가산점을 합산한 면접시험 면접위원별 점수 산술평균 후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 소수점 처리규칙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셋째자리 이하 절사)까지로 함
 - ※ 동점자 발생 시 취업지원대상자, 면접심사 항목 중 직무적합도 고득점자, 청년 의무고용대상자 순으로 합격처리

□ 신체검사 및 결격사유 조회 등

- 대 상 : 최종합격자
- 조 회 : 관련기관에 신체검사 및 결격사유 등 확인
 - ※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 또는 공단 인사규정 제14조에 의한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자는 임용될 수 없음

□ 임용방법

- 임용후보자 등록을 거쳐, 인력수급 상황에 맞추어 성적순위에 의하여 순차 임용(합격 유효기간은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년)
-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결격사유 발생, 입사 후 3개월 이내 자진퇴사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비합격자 임용 가능
- 근로기준법 제70조에 의거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동의한 최종합격자만 임용 가능

□ 예비합격자 운영

- 인 원: 3명 ▷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차순위자
- 유효기간: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 임용 시 발표방법: 유선통보

※ 예비합격 대상자의 등록된 휴대전화 연락처로 3회 연락 실시에도 연락불가 시 임용포기로 간주

□ 제출서류

- 응시지원서 접수 시 제출서류

구 분	내 용	비 고
응시지원서	▪ 자기소개서를 포함한 응시지원서	공 통
개인정보제공 동의서(1부)	▪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서 * 반드시 자필 서명하여야 함.	
자격증 사본(1부)	▪ 응시지원서 내 기재한 자격증 사본 일체 * 생년월일(주민등록번호), 사진은 반드시 블라인드 처리하여 제출	
경력증명서(1부)	▪ 지원자격요건 확인용(담당업무는 상세히 기술) ▪ 관련 경력 입증을 위한 증빙자료* 반드시 제출 * 생년월일(주민등록번호)은 반드시 블라인드 처리하여 제출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1부)	▪ 접수마감일 기준 3개월 이내의 국가보훈처 발행 증명서 * 접수마감일 기준 3개월의 기간은 "2021.6.15.~2021.9.14." * 생년월일(주민등록번호), 사진은 반드시 블라인드 처리하여 제출	해당자

- 면접전형 시 제출서류

구 분	내 용	비 고
주민등록초본 (1부)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일 이후 발행 및 주소 변동사항 포함 ▪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 필수 (초본으로 병역사항 확인이 안 되는 경우 병적증명서 제출)	공 통
군복무확인서 (1부)	▪ 소속부대장 발행 및 전역예정일이 기재된 군복무확인서	
자격증 사본 (1부)	▪ 응시지원서 내 기재한 자격증 사본 일체	해당자
경력증명서 (1부)	▪ 응시지원서 상 경력사항 확인(담당업무는 상세히 기술) ▪ 관련 경력 입증을 위한 증빙자료 반드시 제출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1부)	▪ 접수마감일 기준 3개월 이내의 국가보훈처 발행 증명서 * 접수마감일 기준 3개월의 기간은 "2021.6.15.~2021.9.14."	
직무적합도 자기검증서(1부)	▪ 직무에 적합한 신체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검증하기 위한 서류(양식 참조) * 허위기재 시 불합격 처리	공 통

* 경력 입증을 위한 증빙자료 ▷ ①, ② 모두 제출

- ① 경력확인증명서 ▷ 업무내용이 필히 기재되어 있어야 함
- ② 국민연금 가입자용 가입증명서 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 가입이력 확인서 중 하나 이상
 - 경력확인용 : 가입이력에 회사명칭 및 가입기간이 명시됨
 - 국민연금공단/건강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 지사에서 신청
(국민연금공단/건강보험공단/고용보험 홈페이지 참조)

* ①, ② 모두 제출하여야 경력으로 인정되며, ①, ② 중 하나만 제출할 경우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음 ▷ 증빙서류 미제출 시 응시지원서에 기재된 사항은 인정되지 않음

* 폐업회사의 경우 “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세무서 방문발급)” 제출

* 경력의 범위

- 경력은 경력증명서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으며, 경력증명서와 경력입증을 위한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 경력으로 인정됨에 유의)
 - * 국민연금 가입자용 가입증명서 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 가입이력 확인서
 - 정규직 또는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될 수 있음
 - ☞ 시간제로 근무한 경력은 근무시간(주40시간 기준)에 비례하여 경력의 일부를 인정함(예: 4년간 주20시간 근무한 경우 $4\text{년} \times (20\text{시간}/40\text{시간}) = 2\text{년}$ 인정)
 -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 발행한 증빙서류 일체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
 - 응시자격요건의 경력 산정은 최종시험일(면접시험일) 기준
- * 폐업회사의 경우 “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세무서 방문발급)” 제출

○ 서류전형 합격자가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또는 응시지원서 기재사항과 다르거나 제출서류로 증빙이 안 되는 경우 또는 응시지원서에 가산점을 허위기재하는 경우 등은 불합격 처리

* 임용 후 상기의 사항을 포함한 채용비리사항 확인 시 즉시 합격(임용) 취소

5. 시험일정 및 응시지원서 접수 안내

시험일정

응시원서 접수기간	시험구분	장소 등 공고	시험일자	합격자 발표
2021. 9. 7.(화) ~ 2021. 9. 14.(화) 18:00	서류전형	-	2021. 9. 16.(목)	2021. 9. 24.(금)
	면접시험	2021. 9. 24.(금)	2021. 9. 28.(화)	2021. 9. 30.(목)

- ※ 시험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는 시험 실시 7일전까지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합니다.
- ※ 면접의 경우 면접 대상인원에 따라 일정이 다소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응시지원서 접수안내

- 접수기간: 2021. 9. 7.(화) ~ 2021. 9. 14.(화) 18:00

※ 접수마감일(2021.9.14.)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제출서류: 응시지원서(자기소개서 포함), 경력증명서,
가산점 증빙서류(해당자),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자격증 사본

- 접수방법: 전자우편, 등기우편, 방문 ※ 코로나 19 전염 예방을 위해 방문접수 지양
 - 등기우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새싹로 174(연지동) 총무인사팀
 - 전자우편: bisco@bisco.or.kr

○ 작성방법

- 자격사항 및 경력사항은 업무와 연관성 있는 내용만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서에는 반드시 증빙 가능한 사항만 기재하며, 추후 증빙자료 제출이 불가하거나 제출자료가 지원서에 기재한 사항과 다를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6. 기타사항

- 지역제한 등 응시자격을 미리 확인하고 지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서(자기소개서 포함) 작성 시, 출신학교(출신학교를 유추할 수 있는 학교 e-mail),
가족관계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내용은 일체 기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지원서 기재사항 누락 또는 잘못 작성 또는 허위사실 기재 또는 연락불능,
시험에 관한 규정 위반 등으로 발생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책임으로 합니다.

"블라인드 채용" 시행에 따라 합격결정과 관련 있는 각종 증빙서류는 면접전형 시 제출합니다. 따라서 응시지원서에는 반드시 증빙이 가능한 사항만 기재하시기 바라며 (특히 경력사항), 추후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하거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 깊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단계별 해당분야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는 임용등록을 거쳐 임용하며(합격의 유효기간은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년), 최종합격자 중에서 임용등록을 포기하거나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 의한 신체검사에 불합격 또는 공단 인사규정 제14조의 임용 결격사유 해당 또는 3개월 이내 자진퇴사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경우 예비합격자를 임용할 수 있습니다.
- 예비합격자의 지위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간 유효하며, 예비합격자는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차순위자로서 3명 이내로 함※ 예비합격자의 임용 시 지원서에 등록된 휴대전화 연락처로 통보하며, 3회 연락에도 연락 불가 시 임용포기로 간주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종합격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70조에 의거 “야간근로(22시~다음 날 06시) 및 휴일근로 동의서”를 제출해야 하며, 미동의 시 임용이 불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관련 인사 청탁 등 채용비리 또는 기타 부정합격 확인 시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에 따라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응시자를 대상으로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응시자가 채용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반환하며(다만, 자필서명이 안 되었거나 응시자가 우리공단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채용서류의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우리공단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응시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붙임양식 1)를 작성하여 우리공단 팩스(051-851-7501) 또는 이메일(bisco@bisco.or.kr)로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발송해 드리며, 이 경우 발송요금은 수신자 부담으로 하게 되니 유념 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공단은 응시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채용서류 반환의 청구기간(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까지 채용서류를 보관하게 되며, 그때 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지체 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
- 채용시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신청서(붙임양식 2)를 작성하여 “bisco@bisco.or.kr”로 제출바랍니다.
- 최종합격자에 대해 지방공기업 인사운영기준과 공단 인사규정에 따라 공단 임직원의 친인척(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인척) 재직 여부를 조사하게 되며, 친인척 관계가 있는 경우 별도의 증빙자료 제출 및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합격자 발표는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됩니다.
- 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은 휴직자가 조기 복직하는 경우 계약기간 만료 전 계약이 종료될 수 있으며, 휴직을 연장하는 경우 대체근로자의 근로계약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공단 총무인사팀(☎051-860-766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